

大法院判例를 통해 본

工業所有權制度의 紙上分析

- …… 工業所有權制度의 紛爭은 어떠한 過程을 거쳐 解決되는가? 모든 紛爭……○
- ……이 그렇듯이 工業所有權制度도 大法院에서 解決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
- …… 다만 地方法院 대신 審判所, 高等法院 대신 抗告審判所를 거쳐 大法院에……○
- …… 上告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
- …… 그러면 어떤 紛爭들이 大法院까지 上告되어 어떻게 解決되었는가? 이에……○
- ……本誌는 「判例研究」를 위하여 工業所有權 4法の 代表的인 大法院 判例를……○
- ……모아 分析해 보았다. ……………<編輯者註>……○

◎ 第 9 回 ◎

利害關係人

營業을 廢業한 者의 利害關係

舊 實用新案法 第24條 第2項(現行法 第25條 第2項)이 規定한 實用新案登錄의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利害關係人이라함은 當該 登錄實用新案과 同種의 物品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業者로서 當該 登錄實用新案의 權利存續으로 因하여 그 權利者로부터 權利의 對抗을 받거나 받을 念慮가 있어 그 被害를 받는 直接的이고 現實의인 利害關係가 있는 사람에 限한다고 할 것인 바, 原審이 確定한 事實에 依하면 審判請求人은 이 事件 審判請求當時 銅管都賣業을 經營하다가 그 營業을 事實上 廢業한 後原審의 審決終結時까지 다른 營業을 한 事實도 있다는 것이니, 審判請求人은 本件登錄實用新案의 權利存續으로 因하여 權利者인 被審判請求人으로부터 權利의 對抗을 받을 念慮가 없으므로 (銅管과 本件 登錄實用新案인 鑄鐵管은 各 製造方法이 關한 別個 物品이다. 을第1,2號證 參照) 위 實施의 直接的이고 現實의인 利害關係가 있는 가에 該當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趣旨로 한 原審의 判斷措置는 正當하고 거기에 所論과 같은 법리오해의 違法이 없으니 論旨는 그 理由가 없어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

※ 大法院 1981.4.14 宣告, 79 후 90 判決

軍參謀의 利害關係

陸軍本部 兵站監은 陸軍本部 職制令에 依하여 陸軍本部 參謀部에 屬하고 參謀地位에 있는 審判請求人은 本件 登錄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利害關係人으로 볼 수 없다.

※ 大法院(第3部) 1973.6.5 宣告, 71 후 44判決(實用新案登錄無效, 1971.12.4.1971 抗告審判 第49號 審決)

實用新案法(法律 第952號) 第24條(舊法)의 規定에 依하면 같은 法第18條(舊法)의 規定에 依한 登錄無效의 審判을 利害關係人 및 審査官에 限하여 請求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같은 法 第28條(舊法)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特許法(法律 第950號) 第97條 및 第119條(舊法)의 規定에 依하면 不適法한 審判請求로서 또 欠缺을 補正할 수 없을 때에는 初審判 또는 抗告審判의 審決로서 이를 却下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한편 國軍組織法 第9條, 第10條, 第11條의 規定에 依하면 國防部長官은 軍事에 關한 事項을 掌理하고 各軍 參謀總長은 當該軍을 指揮監督하며 部隊 또는 機關의 長은 編制에 依한 上級部隊 또는 上級機關의 長의 命을 받아 그 所屬部隊 또는 所屬機關을 指揮監督하도록 되어 있고 陸軍本部 兵站監은 陸軍本部 職制令에 依하여 陸軍本部 參謀部에 屬하고 그 職務은 兵站技術의 向上, 兵站物資의 補給, 整備, 調査와 研究, 給養 및 英顯 其他 兵站到 關한 事項을 分掌하고 있음이 分明하므로

參謀地位에 있는 審判請求人을 本件 實用新案 登錄에 對하여 그 登錄無效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所謂 利害關係人으로서 提起한 審判請求人의 本件 審判請求는 不適當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欠缺을 補正할 수 없다면 것이니 만큼 審決로서 이를 却下하여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初審判 및 抗告審判의 審決에 있어서 決定的인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다하여 利害關係人으로서 認定하고 本案에 關하여 判斷을 하였음을 實用新案法上的 利害關係人의 解決에 關한 法理를 誤解하여 審決에 影響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論旨는 理由없이 原審決은 破毀를 免치 못할 것이다.

會社의 理事의 利害關係

審判請求人이 本件 登錄考案과 類似한 考案의 先登錄考案과 類似한 考案을 實施하는 會社의 理事인 것이므로 本件 登錄實用新案에 對한 件外 權利範圍確認審判 當時 件外 當事者間에 共有約定이 있었다 하여 本件 審判請求人이 利害關係人이 됨에 妨害가 될 수는 없다.

※ 大法院(第2部) 1974. 3. 12 宣告, 73 후 37 判決(實用新案登錄無效, 1973. 7. 23. 1972 抗告審判 第418號 審決)

實用新案의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利害關係人이라 함은 當該 實用新案權者로부터 그 權利의 對抗을 받을 念慮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現在 業務上 損害를 받거나 後日 損害를 받을 念慮있는 者를 包含한다 할 것인바(大法院 1963. 2. 28 宣告 62 后 14 判決 參照) 原審이 認定한 事實에 依하면 審判請求人은 本件 無效審判請求의 對象인 登錄第5774號 實用新案보다 先登錄되었고 考案이 類似한 登錄 第3496號 實用新案의 考案인 同時에 權利者이고 또 現在 위 實用新案登錄과 類似한 考案을 利用하여 合成樹脂製品을 生産하고 있는 株式會社 라이온商社의 理事인 事實을 甲第5,6號證에 依하여 認定할 수 있음에 비추어 本件 無效審判을 請求함에 있어서 앞에서 말한 利害關係人에 該當된다고 봄이 相當하고 被審判請求人 主張의 實用新案 權利範圍 審判請求事件의 抗告審判 繫屬中에 審判外 株式會社 금성 플라스틱과 被審判請求人間에 그 主張과 같은 約定이 있었다고 하여 審判請求人이 本件 無效審判請求를 함에 있어 利害關係人이 됨에 妨害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趣旨에서 審判請求人을 利害關係인 者로 본 原審決은 正當하고 反對의 見解에 立脚하여 法令 違背있다는 論旨는 理由없다.

專用實施權者의 利害關係

特許法第97條 第2項에 依하면 같은 法第97條 第1項 第1號, 第5號, 第69條 第1項, 第2項, 第3項 所定の 特許의 無效事由를 原因으로 하는 無效審判은 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에 限하여 請求할 수 있고 利害關係人이라 함은 特許權者로부터 權利의 對抗을 받을 念慮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現在 業務上 損害를 받거나 받을 念慮가 있는 者를 包含한다고 할 것이다. 特許權者로부터 그 特許權의 實施權을 許與받은 者는 그 許與期間안에는 그 權利의 對抗을 받을 念慮가 없어 業務上 損害를 받거나 받을 念慮가 없으므로 그 期間中에는 그 特許에 關하여 無效確認을 求할 利害關係가 없다고 解釋되고 特許의 無效審判을 求할 이와같은 利害關係의 有無는 職權調査事項이라고 하는 것 등은 當院의 일관한 判例이다.

(당원 1963. 2. 28. 宣告 62 后 14 判決 : 1974. 3. 12. 宣告, 73 后 37 判決 1977. 3. 22. 宣告, 76 后 7 判決 : 1971. 4. 28. 宣告, 70 后 68 判決 參照)

그런데 原審決記載에 依하면 原審은 審判請求人과 被審判請求人雙方間에 締結된 基本契約書 및 필터의 구매시방서에 依하면 被審判請求人은 이 事件 特許에 의하여 에어준용 방진필터를 製造하여 審判請求人에게 供給使用케 한 것이고 當事者間에 本件 特許에 對한 實施權을 許與한 事實도 없으며 單純히 供給者와 使用者間의 購買契約書를 締結한 것이므로 이 事件請求는 利害關係人에 의한 適法한 請求라고 判定하였는 바 記錄에 編綴되어 있는 이 事件 特許의 登錄謄本 記載에 의하면 審判請求人은 이 事件이 原審에 계속중인 1973. 1. 23 이 事件 特許의 專用實施權을 許諾받았음을 알 수 있어 그렇다면 審判請求人은 위에서 實施한 利害關係人의 범주에 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原審決은 審判請求의 適法與否에 關하여 審理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的의를 免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點 上 告論旨는 그 理由가 있다.

※ 大法院 1981. 7. 28 宣告, 80 后 77 判決 <계속>

<p>新 刊 案 內</p> <p>CIP와 商標戰略</p> <p>辨理士 金 延 洙 著</p> <p>가 격 : 8,000원</p> <p>판매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資料販賣센터</p>
